

# 기능연속성계획과 재해경감활동계획의 일원화를 위한 기업재난관리표준의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Directions to Unify Continuity of Operation Plan and Disaster Reduction Activity Plan through Improvement of Enterprise Disaster Management Standard

조종연\* · 정종수\*\*

Cho, Jong-yeun · Cheung, Chong-soo

### 요약

본 논문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세우는 “기능연속성계획”과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기업을 대상으로 자율적으로 수립하고 있는 “재해경감활동계획”에 대한 일원화를 위한 「기업재난관리표준」에 대한 개정안의 구성체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현행 「기업재난관리표준」의 미비점들을 도출하고, 해당 미비점을 바탕으로 「기업재난관리표준」의 목차에 대한 사전적 개정안을 도출하였다.

**Keywords** : 재난안전법, 재해경감법, 기능연속성계획, 재해경감활동계획, 기업재난관리표준

### 1. 서론

우리 사회에서는 재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재난 대응을 위한 체계를 잡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대응 체계로써 재난 상황에서 기관의 핵심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능연속성계획’은 「재난안전법」 제25조의2 제5항에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기타 행정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의 장이 의무적으로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있다.

반면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대응계획은 ‘재해경감활동계획’으로써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기업재해경감법”)에서 그 세부계획을 정의하고있는데, 재해경감활동계획은 기능연속성계획과 달리 의무적으로 수립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계획이라는 점에서 차이점을 둔다.

상기한 바와 같이 우리 나라에서의 재난대응계획은 기능연속성계획과 재해경감활동계획으로 이원화되었는데, 이는 곧 지방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과 같이 「재난안전법」에서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써 정의되었는 기관의 경우 법률 상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해야하는 동시에 민간기업으로써의 성향 상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상으로도 볼 수 있다. 이런 기업의 성향을 띄는 기관의 경우 재해경감활동계획을 수립할 경우 「기업재해경감법」에 따라 기능연속성계획의 수립기관으로써 인정을 해주고 있지만, 두 계획의 차별되는 목적 의식과 국제표준인 ISO 22301과 유사한 인증 체계를 가졌다는 점, 그리고 두 계획을 개별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점에 있어 통합적인 관리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능연속성계획과 기업재해경감활동계획의 일원화를 위해 기업재해경감활동의 평가 기준이 되는 「기업재난관리표준」에 대한 개정안의 구성체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 2. 본론

현행 「기업재난관리표준」은 2017년 개정된 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해 「기업재난관리표준」의 미비점을 다음 표와 같이 정리하였다.

\* 정회원 · 숭실대학교 재난안전관리학과 박사과정 jyncho.kr@gmail.com

\*\* 정회원 · 숭실대학교 재난안전관리학과 교수 isobcm@ssu.ac.kr

미비점	비고
재해경감활동,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 업무연속성 사이 혼란된 개념 정의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가 ISO 22301:2019의 업무연속성관리체계와 위상이 동일하다 기술되어 있으나 재해경감활동 정책과 업무연속성 계획이 별도로 정의
동일 개념을 다른 용어로 혼용	업무연속성계획/사업연속성확보계획, 리스크 성향/리스크 속성, 상호의존성/상호작용, 핵심업무/우선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활동 등
잘못된 용어로 기술	중단 기능 단축, 정보 및 데이터 통신 및 목적/목표 등의 용어가 부적절하게 사용되고 있음
요구사항이 중복 반영	재해경감활동 절차 및 계획수립, 재난대응체계, 경보 및 의사소통 등의 목차에서의 사소통이 중복된 요구사항으로써 반영되고 있음

표 1. 「기업재난관리표준」에 대한 미비점

### 3. 결론

현행 「기업재난관리표준」과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개정안의 구성체계의 비교를 통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감사의 글

본 연구는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 분야 전문 인력 양성사업을 통해 지원받아 수행된 연구의 결과이며, 이에 감사드립니다.

#### 참고문헌

행정안전부. (2017) 기업재난관리표준, 행정안전부고시 제2017-1호.

행정안전부. (2021)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 17894호.

행정안전부. (202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제 19234호.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2019) Security and resilience- 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 systems- Requirements (ISO 22301:2019), <https://www.iso.org/standard/75106.html>